

공
고

기안용지

1419.-

(전화번호 217)

전경규정 10 조 31 호
국장 권경사함

처리기한	기안자	결재자
시행일자	보전과 변상혁	보권사회국장
보존년한	기안일자	결재일자
	68. 9. 9.	9. 14

보 조 기
보 권 과 장
기 상 계 장
공고제 199 호

확
인
9월 14일
92

협 조
보 권 과 장
기 상 계 장
주 안 참 조
68년도 제1회 조리사 자격시험 실시

제 1 안 (내부결재)

1. 당시시행 68년도 제1회 조리사 자격시험을 조리사에 관한 구칙 제8조의 주장에 의하여 별첨 계획서와 같이 실시 하고자 하며
2. 이에 소요되는 예산 (새입·새출) 집행은 공고후 응시자 총수에 따라 산출하여 집행하며, 공고후는 공고즉시 청구에 의하여 직분코자 합니다.

첨부 68년도 제1회 조리사 자격시험 실시 계획서

제2안

수신 서울보전학교

채무 등전

1. 당시 시행 18년도 제1회 조리사 자격시험을
별첨 공고문과 같이 실시코져 하노바 귀교를 학과 및
실기시험의 시험장으로 사용코져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 1부

제3안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보건사장 (취성과장)

재무 서울특별시 시행 68년도 제1회 조리사 자격시
험 실시

1. 당시 시행 68년도 제1회 조리사 자격시험을
별첨 공고문과 같이 실시 하오니 귀관하에 널리 알려
다수 응시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 1부

수신처. 1. 보건사회부 장관

2. 나 2~11.

3. 대한요양사업협회 중앙회장및분회장

4. 대한수박업협회 중앙회장및분회장

5. 김재우중합고등기술학교장

6. 서울고등기술학교장

서울특별시 서명 68년도 제1회 조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서.

조리사에 관한 조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시 시험
68년도 제1회 조리사 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함

1. 시험 실시일자

가. 학과시험, 1968. 11. 7. 09:00시 1시간

나. 실지시험, 1968. 11. 19 부터 11. 22 까지 4일간

2. 시험장소 시내 중구 중무로 2가 50 서울보리학교

가. 학과시험,

나. 실지시험.

3. 시험과목

가. 학과시험

(1) 위생법규

(2) 공중위생학

(3) 영양학

(4) 식품학

(5) 식품위생학

나. 실지시험

(1) 한식부

(2) 양식부

(3) 중주식부

(4) 일본식부

상기 구분야중 선택한 1분야.

4. 응시자격 :

가. 국민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라야 한다.

(1) 기독교, 불교, 병원과 기타 후생기안 등의 공적시설 또는 공공기관에서 음식물의 조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실이 있다고 그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자

(2) 음식점 영업종 1월을 통산 1인 평균 100 인분 이상의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여관, 호텔, 요리점, 야바리 또는 바에서 음식물의 조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실이 있다고 그시설의 장이 증명하는 자

5. 응시 절차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1) 접수기간 1968. 10. 14 부터 1968. 10. 22 까지 9일간

나. 응시원서 접수장소

(1)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 보건과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노장 서식) 1부

(2) 조리업무 종사증명 (응시원서 이면)

(3) 사진 (3x4센치 할로 상반신) 3매

(4) 수수료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200원

라. 응시원서와 호적여포 및 결격사유 확인

(1) 조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와 별첨 서식 양식과 함께 의뢰 배부 한다.

1.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조리사이 관련 사유로 보건소장 진단을 받은 민원서류 간소화 방안이 여러 제출서류에다 생각하고 동시에 합격자가 제출하는 조리사 면허신청서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나. 지참 도구

1) 학과시험. 불면 약은 안보일 (정액, 휴식)

2) 실기시험. 식수, 위생복, 위생모, 형주, 손수건

바. 수험료 교부

1. 시험 당일 08:00부터 시험장에서 응시원서 접수증과 수험료를 교환하며 원서에 첨부된 사진과 본인을 대조하여 시험장내 지정된 자석에 부착하도록 하며 수험료는 과응봉투에 부착하고 수험하도록 한다.

사. 학과시험

1. 학과시험은 시험과목 5과목을 1교시에 3과목, 2교시에 2과목을 함하여 실시하되. 문제당 배점은 2분으로 하며 09:00부터 실시한다.

2. 1교시와 2교시 사이의 휴식 시간은 30분으로 하며 09:00 (제1교시)시와 11:30시 (제2교시)에 늦은 수험생은 수험을 불리 한다.

아. 실기시험.

1. 실기시험은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문제당 배점은 30분내외로 하며 09:00시부터 실시 한다.

다. 합격자 발표.

1) 합격자 발표는 시험후점에 게시 발표한다

2) 학과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시험을 수행할수 있으며 실기시험 합격자는 최종 합격자로 본다

자. 합격증 교부

1) 최종 합격자는 동시험 합격증과 합격자 명부를 작성한후 합격증을 교부한다.

6. 2차 시험 위원회 구성

가. 명칭

서울특별시 조리사 자격시험 위원회 라한다.

나. 임원

- (1) 위원장 1인
- (2) 부위원장 1인
- (3) 간사 1인
- (4) 학과시험위원 과목별 1인
- (5) 실기시험위원 분야별 2인
- (6) 서기 약간명
- (7) 감독관 수험교실별 2인

다. 구성

1) 본 위원회 위원장은 보건사회부장 으로한다

2) 부위원장은 보건과장으로 한다.

3) 간사는 위생계장으로한다

4) 학과시험위원은 (과목별로) 보건관계 현직자 2명에서 권위있는자로 한다.

5) 실기 시험 위원은 아래와 같이 선정
할 자로 한다.

가) 주 명양사 양성 학교 명양과 교수,

나) 주 우리 학원장,

다) 조리사 양성 학교장,

라) 조리사 중매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시기는 보편과 위생대 직원으로 한다.

7) 시험 감독관은 보편소 위생과 직원으로
한다.

라. 직무.

1) 본 위원회 위원장은 시험기간중 시험위원
과 양재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학과 및
실기 시험의 분재 및 양재의 선정 확보 등의 책임을 지며
시험 전반의 책임을 진다.

3) 간사는 시험 실시에 따른 제반 준비 및
시험장을 관리하며 시험 감독관 및 수험생의 부정행
위자를 결정 처리 하고 제반 감독을 한다.

4) 학과 시험 위원은 담당 감독의 출제 및
채점의 책임을 진다

5) 실기 시험 위원은 담당 분야의 출제 및
채점의 책임을 진다.

6) 시기는 시험 전반에 대한 사무를
담당한다.

가. 시험 감독관은 시험장의 정서유지
와 시험 안전지의 배부 및 수검과 부정행위자의 처벌
및 퇴장의 책임을 진다.

나. 시험 ~~출제~~ 방법. 시험위원 위촉

... 학과 시험위원과 실기 시험위원은 별지 서
식에 의거 위촉하며

... 기타 관계안은 위촉 ^장을 생략한다.

바. 시험 출제 방법.

... 위촉받은 학과 시험위원은 해당 과목
에 대한 시험 문제 40분제를 출제 하되 문제당 2분
이 내어 해답할 수 있는 선택형으로 출제하며 범위는
주요한 과목 출제자 정도에 맞춘 문제라 한다.

... 위촉받은 실기 시험위원은 해당 분야
에 대한 시험 문제 5분제를 출제 하되, 문제당 20
~ 30분 소요되며, 시장가격으로 100원 정도로 원료를
구입할 수 있는 범위로서, 실무에 3년 종사자가
할 수 있는 범위라 한다.

사. 채점

... 학과 시험

... 출제 한 20분제의 배점은 5점으로
100점 만점이라 하며 ^{100점 만점이라 함은} 맞은 답만 계산 하므로 틀린 답의 감점은 없이 한다.

... 실기 시험

(가) 실기 시험은 위성과 기술의 배선
으로 구분하여 채점하며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시험위원 2인으로 600점을 만점으로 한다.

아. 시험 합격 기준

(1) 학파시험

가) 학파시험 5과목의 총점이 500점^{만점}으로 60점 기준인 총득점 300점을 득하면 합격으로 하고 300점 미만은 불합격으로 한다.

나) 총득점이 300점 이상이라도 과목별 득점에 40점 미만의 과목이 1과목이라도 있을 경우는 과낙으로서 불합격이 된다

(2) 실기시험

가) 실기시험위원 2인의 채점 총점 600점 만점으로 60점 기준인 총득점 360점을 득하면 합격으로 하고 360점 미만은 불합격으로 한다

7. 공고 방법

가. 관공의문 개사에 1회의 공고한다

나. 공고안 별첨

8. 세입 예정액

가. 공고후 응시자 총수에 의거 산출한다

(응시자총수 × 응시수수료) + (응시자중합격자 × 면허수수료) = 세입액

9. 소요 예산

가. 응시자 총수에 의거 소요예산을 산출 요구한다.

나. 자격시험 신문 공고료는 다음과 같이 집행한다.

16-11

신용공고료
 新萬文什의題

구분	소요금액	산출근거	지출비목	지출방법
신용공고료	56,000 원	200원 x 20면 x 20명 x 24	보경미 보경관리 위성관리 수수료수입	참구에 의한 지출

4. 봉사활동 실적시험을 재요구함에
 대하여는 소요예산 범위 내에서 전도자금으로
 집행한다.

조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본적 _____

주소 _____

성명 _____

(한문)

성년필인 서기 19 ____

년

월 ____

일

(당

서) _____

첨번 커시에서 시행하는 조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 합니다.

1. 응시 구분

외부

1968

지원자

인

서울특별시

기하

수수료 (시,수업료) 200원 첨부

조리사 자격시험 응시표

수험번호

응시구분

성(도)

분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서울특별시 조리사 자격시험위원회

조리사자격시험회접수용

접수번호

응시구분

본 적

성 명

접수일자

조리사자격시험위원회

13

16-12

21

"이연"

조직업무 종사자 증명서

주소

성명
생년월일

종사기간	기관(시설)명	소재지	기관(시설)성명	도목사 확인			
				확인일자	도목사명	확인장소	확인인

상기자는 동 기관(시설)에서 음식품 조직업무에
상기 증명기간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함

1918.

기관 장 또는 시설의장

의

주의사항

- 이표는 수첩장비 증명용
과 교환할 수 없다.
- 수첩에는 시간을 엄두하여야
한다.

14
16-13

주의사항

- 이표를 유머하여 아뢰면 차는
공시 불 받지 못한다
- 유머장에 임원지에는 이표를
반듯이 왼쪽 상부의 밑에야 한다
- 수첩에는 시간은 엄수할 것이며
시범장의 지시에는 순응하여야 한다.

22

의 추 감

선 명

귀하를 당시 시험 1068명도 제1회 조리사 자격
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함
1. 담당 과목

1918.

서훈투명시장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법무삼삼호 호 ~~삼~~

조리사에 관한 규칙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68년도

제 1 회 조리사 자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968

서울특별시 장

1. 시험 실시 일자 및 장소

가. 학과시험 : 1968. 11. 2 09:00시

나. 실기시험 : 1968. 11. 19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함) 우리 1968. 11. 22 까지 서울특별시

다. 시험장소 : 서울 보건학교 (중구 중무로 3가 50번지)

2. 시험 과목

가. 학과시험 : 위생법규, 공중위생학, 영양학, 식품학, 식품위생학

나. 실기시험 : 한식, 양식, 중주식, 일본식, 중 선택한 1 과목

3. 응시 자격

가. 국민학교 이상과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기숙사, 학교, 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음식시설 또는 공공기관에서 음식물의 조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실이 있다고 그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자.

(2) 음식점 영업중 1월을 통한 1일평균 100이분 이상의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호텔, 여관, 요리점, 주바레 또는 바에서 음식물의 조리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다고 그 시설의 장이 증명하는 자

4. 응시 절차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장소

16-16

(1) 접수기간: 1988. 10. 12. 부터 1988. 10. 22 까지

(2) 접수장소: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 보건과

나. 제출서류

(1) 응시원서 (소정서식 1통)

(2) 조리업무 종사증명 (응시원서 이면)

(3) ~~초과초분~~ ~~모든~~ ~~구~~ ~~민~~ ~~등록~~ ~~초분~~ 때

(4) ~~조리사 자격증~~ ~~보인~~ ~~수강~~ ~~결단서~~ 때

(5) 사진 (3x4 인치, 탈모, 상반신) 3매

(6) 수수료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200원

다. 지침도구

(1) 학과시험: 불옌 또는 반년판 (청색 또는 흑색)

(2) 실기시험: 식도, 위생복, 위생모, 행주, 손수건.

5. 합격자 발표 일시 및 방법

가. 학과시험 1988. 11. 16. 시험후정에 게시

나. 실기시험 1988. 11. 30. "

6.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 당일 08:00 까지 시험장에 도착하여 시험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수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수험개시시간 09:00 시에 자참자는 수험을 불허한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당시 보건과 (75) 6647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